

 금융위원회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 금융혁신과장 박 주 영(02-2100-2530)		담 당 자	김 민 하 사무관 (02-2100-2531)

제 목 :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1 | 개 요

- '21.3.24일,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 (이하, 금융혁신법)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
 - 동 법안은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('20.10.28)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('21.2.25)한 것으로 법사위 심사('21.3.16)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.
 -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따른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결정 시, 특례기간이 연장(최대 1년6개월)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번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, 소비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 - 아울러, 규제개선 요청제를 제도화하여 혁신금융사업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한편, 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규제개선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※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「규제 샌드박스 5법^{*}」은 혁신금융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(2+2)으로 제한되어 기간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중단 우려가 있어,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규제 샌드박스 5법」 개정이 동시 추진되었습니다.

* 금융혁신법(금융위), 산업융합촉진법(산업부), 지역특구법(중기부), 정보통신융합법(과기부), 스마트도시법(국토부)

① 혁신금융사업자의 '규제개선 요청제' 도입

-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해당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가 규제를 개선*해 왔으나,
 - * 그동안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39건 관련 68개 규제 중 13개 규제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었으며, 23개 규제에 대해서는 '21.2분기까지 정비 착수 예정
- 현행 금융혁신법 상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.
- 이번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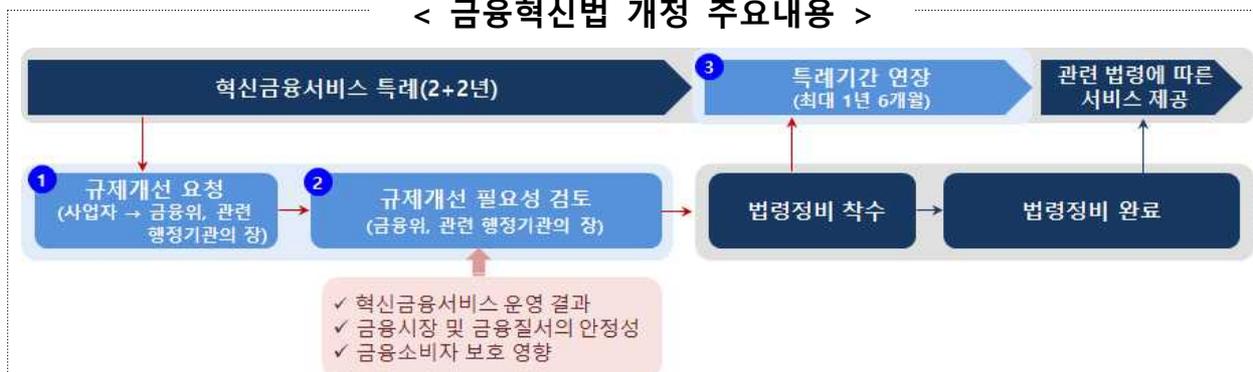
②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구체화

-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*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.
 - *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 검토 → 해당 규제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정비 착수(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)

③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, 최대 1년6개월간 '특례기간 연장'

- 금융관련법령의 정비 결정시,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 정비가 완료·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이 경우,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(6개월+각 6개월씩 2회 연장)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

< 금융혁신법 개정 주요내용 >



□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
* 다만, 별표 「금융관계법률」의 개정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새롭게 제정·시행되는 법에 따른 특례요청 신규수요 등을 고려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

□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-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 시행(19.4.1일)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'금융규제 샌드박스' 제도를 운영 중
 - **(내용)** 동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* 되면 인가,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·면제
 - * (심사요건) 서비스 혁신성, 소비자 편익, 사업계획 구체성·타당성 등
 - **(운영절차)** (i)수요조사 접수 → (ii)컨설팅 → (iii)정식신청 접수 → (iv)실무검토 → (v)심사(소위/혁신위) → (vi)금융위 의결순 진행
 - **(예산지원)** 혁신적 아이디어·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·사업화 할 수 있도록 비용(인건비, 소프트웨어 비용 등) 지원(기업당 최대 1.2억원)
- '19.4.1일 이후 19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, 이중 7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
 - 29개 핀테크·스타트업이 총 5,857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('20.12월말 기준)
 - **(사례)** "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"을 운영중인 핀다, 핀셋, 팀링크는 서비스 출시와 함께 각각 45억원, 37억원, 3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
 -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대출이자 등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
 - **(사례)** 핀다의 "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"(총대출 25,716건, 4,561억원)을 통해 우대금리가 적용된 대출 4,800건(1,010억원)을 실행해 이자 13억원 절감('19.10.~'20.12.)
 -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가능한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접근성 제고
 - **(사례)** 회사원 B씨는 은퇴하신 부모님과 해외여행에서 "On-Off 해외여행자 보험" (농협손해보험·레이니스트, '19.6월)을 추천받아 이용하였으며, 이후 부모님 단독 여행시에도 클릭 한번만으로 간편하게 여행자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됨
 - 중소기업,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
 - **(사례)** 삼성생명의 "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단체보험"을 통해 1,444개 사업장(4,035명)이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산재 등에 대비('20.4.~20.12.)